< 열매달반 - 5세 >

구분	교육일자 (필수)	교육시간 (필수)	누적시간	교육아동수 (선택)	비고*
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(6개월에 1회 이상 / 연간 8시간 이상)	3/19	30분	30분	6명	
	4/21	30분	1시간	6명	
	5/6	30분	1시간 30분	3명	
	6/8	30분	2시간	6명	
	6/25	30분	2시간 30분	6명	
	7/3	30분	3시간	6명	
	7/10	30분	3시간 30분	5명	
	7/15	30분	4시간	5명	
	8/20	20분	4시간 20분	5명	
	8/21	20분	4시간 40분	5명	
	9/3	20분	5시간	5명	
	9/28	30분	5시간 30분	5명	
	10/22	30분	6시간	5명	
	10/26	30분	6시간 30분	3명	
실종·유괴의 예방·방지교육 (3개월에 1회 이상 / 연간 10시간 이상)	3/10	30분	30분	6명	
	4/23	30분	1시간	6명	
	5/19	30분	1시간 30분	6명	
	6/22	30분	2시간	4명	
	6/24	1시간	3시간	4명	
	6/30	30분	3시간 30분	6명	
	7/1	30분	4시간	6명	
	7/8	1시간	5시간	4명	
	7/14	30분	5시간 30분	5명	
	7/15	30분	6시간	5명	
	8/7	30분	6시간 30분	4명	
	9/10	30분	7시간	3명	
	10/1	30분	7시간 30분	5명	
	10/13	30분	8시간	5명	
	10/26	30분	8시간 30분	3명	
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、남용 예방 교육	3/10	30분	30분	6명	
	3/17	30분	1시간	6명	

(3개월에 1회 이상 / 연간 10시간 이상)	4/6	20분	1시간 20분	6명	
	5/29	30분	1시간 50분	6명	
	6/4	30분	2시간 20분	6명	
	6/24	30분	2시간 50분	4명	
	7/2	30분	3시간 20분	6명	
	7/9	30분	3시간 50분	4명	
	7/15	1시간	4시간 50분	5명	
	7/16	30분	5시간 20분	5명	
	7/28	20분	5시간 40분	5명	
	8/10	30분	6시간 10분	6명	
	9/7	30분	6시간 40분	5명	
	9/8	20분	7시간	5명	
	10/6	30분	7시간 30분	5명	
	10/26	30분	8시간	3명	
재난대비 안전 교육 (소방안전포함) (6개월에 1회 이상 / 연간 6시간 이상)	3/12	1시간	1시간	6명	
	3/13	20분	1시간 20분	6명	
	3/23	10분	1시간 30분	6명	
	3/24	10분	1시간 40분	6명	
	4/1	20분	2시간	6명	
	4/13	5분	2시간 5분	6명	
	5/13	5분	2시간 10분	6명	
	5/13	1시간 30분	3시간 40분	6명	
	5/26	1시간	4시간 40분	6명	
	6/15	5분	4시간 45분	5명	
	6/19	1시간	5시간 45분	6명	
	7/2	20분	6시간 5분	6명	
	7/14	5분	6시간 10분	5명	
	7/21	20분	6시간 30분	6명	
	7/21	1시간	7시간 30분	6명	
	7/28	1시간	8시간 30분	5명	
	8/13	5분	8시간 35분	5명	
	8/25	20분	8시간 55분	5명	
	9/3	15분	9시간 10분	5명	
	9/15	5분	9시간 15분	5명	
	10/15	5분	9시간 20분	5명	
	10/26	30분	9시간 50분	3명	
	10/29	20분	10시간 10분	5명	

교통안전 교육 (2개월에 1회 이상 / 연간 10시간 이상)	3/26	30분	30분	6명	
	3/27	30분	1시간	6명	
	4/2	30분	1시간 30분	6명	
	4/8	30분	2시간	6명	
	4/20	20분	2시간 20분	6명	
	5/13	1시간 30분	3시간 50분	6명	
	5/21	20분	4시간 10분	6명	
	6/2	30분	4시간 40분	6명	
	6/24	1시간	5시간 40분	4명	
	7/1	30분	6시간 10분	6명	
	7/7	20분	6시간 30분	6명	
	7/16	30분	7시간	5명	
	8/4	20분	7시간 20분	6명	
	8/20	20분	7시간 40분	5명	
	9/21	20분	8시간	5명	
	10/14	30분	8시간 30분	5명	
	10/19	30분	9시간	5명	
	10/26	30분	9시간 30분	3명	

* 아동복지법 제31조(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)에 의거 의무 교육 기준

※ 필요시 행을 추가하여 작성